

「KEB하나 하도급지킴이 통장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제1조 적용범위

이 특약은 KEB하나 하도급지킴이통장(구 외환은행) (이하, '이 통장'이라 한다)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'예금거래기본약관' 및 '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' 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계정과목

이 통장의 계정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제4조 가입금액

이 통장의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
제5조 금리적용

- ① 이 통장은 매영업일 영업점이나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.
- ② 이자는 매년 3, 6, 9, 12월 제 3금요일의 다음날(원가일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③ 이자계산은 예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- ④ 이 통장의 적용 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금리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가 적용됩니다.

제6조 제한사항

이 통장의 출금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이 운영하는 정부계약, 하도급관리시스템, 대금e-바로, 클린PAY, 한수원PMS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, 창구 및 자동화기기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 합니다.

제7조 우대서비스의제공

이 통장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- 1.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면제
- 2.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한 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

부칙(제정)

이 특약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(1)

이 변경특약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칙 (1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